www.mogef.go.kr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가족부

Ⅰ. 추진배경 07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08

2. 정책환경 및 한계 09

Ⅱ. 추진방향 11

1. 수립방향 12

2. 비전 및 목표 13

3. 구조 및 특징 14

4. 제1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15

5. 주요 핵심과제 16

Ⅲ. 정책 과제 17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8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2

❶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22
❷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22
❸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23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24

❶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24
❷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25
❸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25
❹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26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27

❶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27
❷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27
❸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28
❹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28

차 례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30

❶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30
❷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31
❸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3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2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36

❶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36
❷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37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8

❶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38
❷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38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0

❶ 성별임금격차 해소 40
❷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41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42

❶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42
❷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43
❸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44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5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8

❶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8
❷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48
❸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50
❹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51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52

❶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52
❷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52
❸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52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53

❶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53
❷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53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54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58

1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58
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59
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60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62

1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6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63
3 법정근로시간 준수 63
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64
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64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66

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66
2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66
3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67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68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9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72

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72
2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73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74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76

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76
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77
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77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80

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80
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81
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82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83

차 례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84

❶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84
❷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85
❸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86
❹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86
❺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87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88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91

❶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91
❷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91
❸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92
❹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92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93

❶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93
❷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93
❸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94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95

❶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95
❷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95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96

❶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96
❷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97

Ⅳ. 과제별 소관부처 99

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117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 정책환경 및 한계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❶ 수립배경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 ~ 2017)'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수립 필요

>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 ~ 2017)**
>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 ~ 2017)을 수정·보완함
> *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목표) 성별격차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존중

❷ 추진경과

- ○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분석 ('16.9 ~ 10월, '17.3월 공표)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7.1 ~ 11월)
- ○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17.5월)
-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17.6 ~ 7월)
- ○ 관계 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17.9 ~ 11월)
-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확정 및 발표 ('17.12월)

2. 정책환경 및 한계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 필요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음

* '온라인 상 여성 비하 표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16년): 78.2%
* 현재 우리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16년): '양성평등' 21.0%(여 14.6%, 남 27.5%), '여성이 불평등' 62.6% (여 74.2%, 남 50.8%), '남성이 불평등' 16.4%(여 11.2%, 남 21.6%)

성별 고용격차 해소 및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다각화 필요

○ 여성 고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하며, '유리천장' 등으로 의사결정 직위에의 여성 참여 저조

* 30대 고용률('16년): 女 58.3%, 男 90.2% / 평균 월급여액('16년): 女 187만원, 男 292만원
* 민간 관리자 중 여성 비율('17년): 21.2% /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16년): 13.5%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정착 필요

○ 가족친화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었으나, '사내눈치보기'로 활용이 어려운 여건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제도에 대해 낮은 인지도

*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16년): (300인 이상) 83.9%, (100 ~ 299인) 59.5%, (30 ~ 99인) 51.0%, (10 ~ 29인) 48.0%, (5 ~ 9인) 44.6%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필요

○ 각종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높아졌으나, 신종 폭력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은 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

* '용인될 수 없고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16년): 직장 내 성희롱(84.5%), 데이트폭력(80.3%), 성매매(78.4%), 부부폭력(69.5%)
*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피해자 중 여성 비율: '10년 77.3% → '15년 89.4%

Ⅱ. 추진방향

1. 수립방향
2. 비전 및 목표
3. 구조 및 특징
4. 제1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5. 주요 핵심과제

1. 수립방향

◈ 양성평등(성평등)의 정의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대중매체와 온라인 상의 성차별 개선 및 남성이 함께 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를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에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고용 격차 해소)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성집중 직종의 근로 환경 개선

■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하여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를 위한 과제 보완

■ (일·생활 균형)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 분야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의 보건의료정책 추진기반 마련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부처별 성평등 목표 실현 등 정책 추진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2. 비전 및 목표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정책 과제

대과제(6개)	중과제(22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3. 구조 및 특징

기본계획의 구조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할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구성

구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 ~ 2022년)
기간	2018 ~ 2022년
과제 구성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추진기관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의 특징

○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16.9 ~ 10월),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 ~ 7월)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정책 반영

- 국민이 꼽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신규과제 반영

○ 근본적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집중하면서, 성별 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 구조적 개선 추진

- 대중매체와 온라인 상의 성차별 해소 노력 및 신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
- 일자리 진입, 고용현장, 경력관리 등 고용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과제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등을 통한 범부처의 책무성 강화

4. 제1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구 분		제1차 기본계획(종전)	제2차 기본계획(추가)
비 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 표		성별격차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분야별 추진방향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학교교육, 미디어,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 청년, 재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기회 확대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등 성차별 개선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공공부문 중심 대표성 향상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임원 비율 공개 등 민간부문 대표성 향상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자녀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 ▶ 성인지적 건강 증진 정책 기반 마련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5. 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Ⅲ. 정책 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3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3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3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4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1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2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3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현황 및 진단

- 그 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향상되어 왔으나, 아직 국민 대다수는 우리사회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국가성평등지수: ('11년) 67.4점 → ('15년) 70.1점

  ○ 최근 실태조사* 결과, 79.0%가 우리나라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여성이 불평등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62.6% 여성이 불평등, 16.4% 남성이 불평등)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상승 추세로 2015년 70.1점이나, 분야별로 차이가 큼

  *분야별 점수: 경제활동 (71.5점), 의사결정 (25.4점), 교육·직업훈련 (93.4점), 복지 (71.6점), 보건 (95.4점), 안전 (55.4점), 가족 (70.0점), 문화·정보 (87.1점)

〈성평등 여부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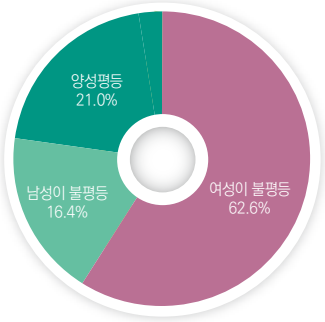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국가성평등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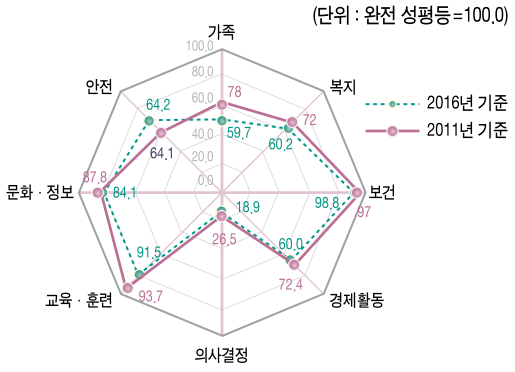

* 자료: 2016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0.649점(1: 완전 평등, 0: 완전 불평등)으로 144개국 중 116위로 낮은 수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사회에 아직 남아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고정관념이 강한 경향을 보임

○ '여성은 직장보다 자녀 돌봄이 우선', '남성이 생계부양자',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등의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을 상당수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많게는 남녀간 14.0%p, 세대간(29세 이하와 60대 이상 간) 44.0%p의 큰 인식 차이를 나타냄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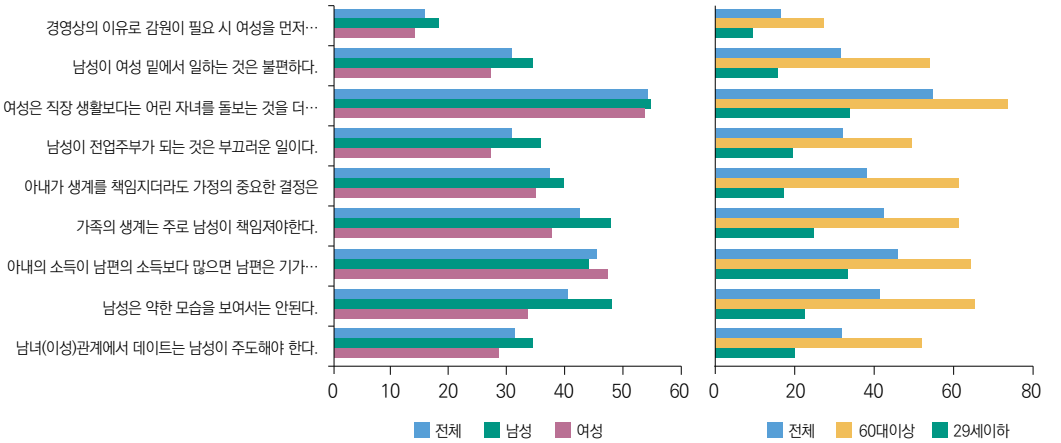

* 출처: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값

양성평등 교육은 저연령부터 양성평등 의식이 내재화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교과서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거나 학교 교사가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

* 자료: 학교 교사가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자주하는 편이라는 청소년이 22.6%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진로에 있어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희망직종이 여학생과 남학생 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 이분화되어 있음

○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유형은 여학생의 경우 '타인을 돌보거나 돕는 일'과 '문학·예술 분야의 일'이 높고, 남학생은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과 '분석적 사고를 통해 원리를 이해·활용하는 일'이 높음

○ '타인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절반 수준에 불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유형〉

(단위: %)

항 목	전체	여성	남성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18.1	4.6	30.5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	20.0	15.8	23.9
미술·문학·음악작품 등을 창작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	20.9	**30.4**	12.1
다른사람들의 복지증진, 교육,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	17.6	**31.9**	4.5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10.8	7.1	**14.2**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 성별 갈등이 과격하게 표출되고 있고,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이 심각하여 규제와 자정노력이 필요한 실정

○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남성들은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성차별, 편견, 비하의 문제'(21.3%)를 1순위로 꼽음

○ 각종 대중매체 상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해 60.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의 여성 비하 표현'(78.2%)과 '인터넷 배너 광고의 선정성'(77.3%)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높음

〈대중매체 상의 성차별적 표현의 심각성〉

(단위: %)

구분	온라인상 여성 비하 표현	인터넷 배너 광고의 선정성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 하는 TV 오락프로	남성의 외모를 희화화 하는 TV 오락프로
전체	**78.2**	**77.3**	64.4	60.7
여성	**86.1**	**85.6**	72.7	68.2
남성	**70.1**	**69.0**	56.1	53.2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추진계획

1-1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청소년 대중매체 모니터단 구성 등을 통해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개선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등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❶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
-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홍보 및 활용 강화

❷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활성화 (여성가족부)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 대중매체 모니터단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❸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기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성비 균형 제고를 위한 노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급 심의위원에 대한 성평등 간담회 추진
- 방송 모니터 요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온라인 상 성차별 및 선정적 내용에 대한 심의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 온라인 상 성차별 및 선정성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온라인 상 성차별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내 온라인 인권 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및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내 성차별 관련 규정 강화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양성평등 심의기구 신설 촉구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내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및 민간에 대한 심의 신청 개발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1-2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초등 국정도서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학 교양 교과목 내 양성평등 교육 개설 권장 등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진로관련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내용 포함 운영 등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제고
-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 유아, 초·중등학생, 대학생 등 각급 학생에 대한 참여형 수업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 (교육부)

- 초등 국정도서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

○ 초·중등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부)

- 학교 및 체육시설 내 성별 탈의 공간 확충
- 학교 스포츠클럽 내 성별 선호 스포츠 운영 권장

○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

- 대학 교양 교과목 내 양성평등 교육 개설 권장
- 대학별로 양성평등 교육 시행 확대 유도

❷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교육부)

- 진로교육법의 기본방향(제4조) 및 책무(제5조) 부분에 양성평등 가치 추가 개정 검토

○ 양성평등한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 강화 (교육부)

- 진학지도 등에 성별 다양한 진로에 대해 지도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교원연수 시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❸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
- 대학 교직원, 시간강사, 교수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등) 실시 권고 및 지원
- 교육대 및 사범대 교직과목에서 양성평등 관련 내용 편성 운영 등 예비교원 양성평등 교육 강화
- 학교 전문상담교사 2급 취득 과목 내 양성평등 의식 및 관련 교육 강화

○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

-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 등 학내 비교원 상담사에 대한 양성평등 연수 강화

○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령별 학부모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여학생의 생리공결제 지속 운영 및 안내 (교육부)

- 생리공결제 사용 시 출석인정 가능 안내 실시

○ 양성평등 초·중등 교육체계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교육 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여성가족부 전담부서 설치

○ 양성평등 초·중등 학교 운영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자체평가 우수 학교 선정 및 표창 실시
- 양성평등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 양성평등 시범학교 확대 운영 및 내실화

○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교육부, 여성가족부)

- 국공립대 여성교원 확대 지원
-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양성평등 우수사례 확산 심포지엄 개최 및 미흡대학에 대한 컨설팅 추진

1-3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성차별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실시 등 생활 속 성평등 실천
- 남성 실천 모임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1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을 강조하는 캠페인 확산 및 홍보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

- 성불평등 명절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및 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여성가족부)

-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 및 표현을 자제하는 캠페인 실시
- 성평등 언어·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 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감수 및 평가 시 관련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수
- 대국민 대상 공공언어 감수 지원 시, 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❸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여성가족부)

- 지역의 여성문화 전문가, 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여성 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 역사 속 여성인물 재조명을 위한 여성문화·여성사학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추진

○ 국립여성사전시관 이용 활성화 (여성가족부)

- 국립여성사전시관의 다양한 연령층 및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 자유학기제 관련 양성평등 현장체험기관으로서의 국립 여성사전시관 활용 추진
-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❹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여성가족부)

- 여성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 계와의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 여성단체 등 연계, 지원을 통한 공론의 장 확대
- 다양한 형태의 토크콘서트 등 소통프로그램 시행
-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TF)」 출범·운영

○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 양성평등주간 계기 캠페인 실시

○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및 남성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 일상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 남녀평등 문화확산과 폭력예방에 앞장서는 남성들로 구성된 실천 모임(성평등 보이스 등) 지원 및 활성화

○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는 양성평등정책 홍보 (여성가족부)

- 이상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고, 양성평등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홍보

1-4 |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온라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모바일 콘텐츠 확산

❶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지도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기자·PD 등 대국민 영향력이 큰 언론·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방송 예비인력 양성 단계에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예비 드라마 PD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콘텐츠 잠재인력에 대한 온라인 교육인 사이버 아카데미에 양성평등 교육 신설

○ 법조인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법무부, 여성가족부)

- 현직·예비 법조인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공동 추진

○ 근로감독관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고용현장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❷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 온·오프라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여성가족부)

-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모바일 콘텐츠 제작 확산

○ 분야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여성가족부)

- 가이드북 및 청소년·사회복지·방송미디어 등 분야별 강의안 개발
- 가부장적 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별 표준교안 개발 (여성가족부)

❸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 기반의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교육 허브기능 강화 및 각 지역사회 양성평등 교육 지원 강화

○ 양성평등 전문강사의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전문강사에 대한 강의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강화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1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2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2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1 성별임금격차 해소
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진단

● 고용시장 진입에 있어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고용의 질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

○ 대학 진학률이 '09년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15년 국가성평등지수는 93.4점

- 성별 간 고용률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여성 고용률은 '16년 56.2%로 남성 고용률 75.8%에 비해 약 20.0%p 낮은 수준

(* '16년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학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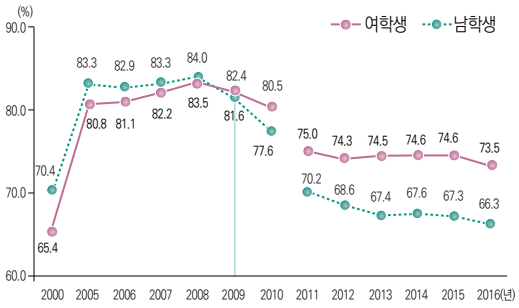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성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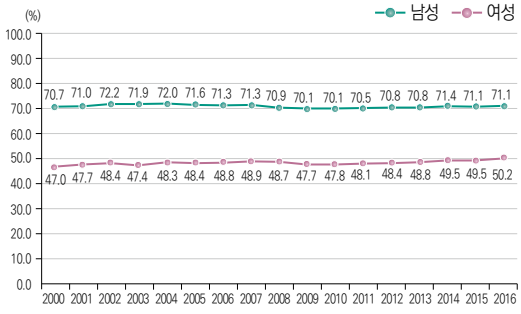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여전하고, 군인·경찰 등의 직종은 성별분리 채용을 실시하며 여성 채용비율이 남성에 비해 극히 낮아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

- '제조업' 분야에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도 남성 비중이 높으며, '교육·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는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음

〈산업별 남녀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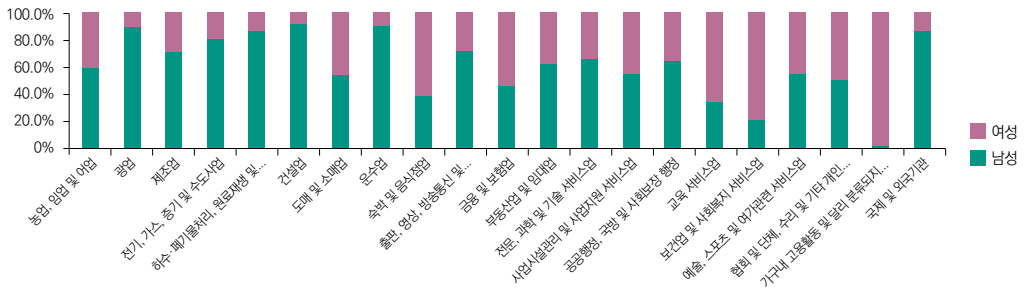

- 이공계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공계 산·학·연에 재직 중인 과학기술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은 19.4%에 불과한 실정('15년 기준)
- 전체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0% 수준('15년)이고, 성별 분리 신입생 모집을 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2 ~ 3배 높은 수준

○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여성은 41.0%(정규직 59.0%)로 남성 26.4%(정규직 73.6%)에 비해 높은 수준

(* '16년 8월 기준, 통계청,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도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여성의 경력관리 및 고용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

○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 대비 62.8%('1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큰 수준

〈주요 OECD 회원국의 성별임금격차〉

(단위: %)

연도	OECD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4년	**15**	15	19	7	20	14	17	26	**37**	17	18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16.7월 발표)

** OECD의 남녀 임금격차 분석기준은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평균값, OECD는 중간 값으로 비교)

○ 여성은 30대 중반에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여전하고, 성별임금격차는 30대 중반~40대 초·중반에 증가폭이 커지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30대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많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고용의 질이 낮고,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 가능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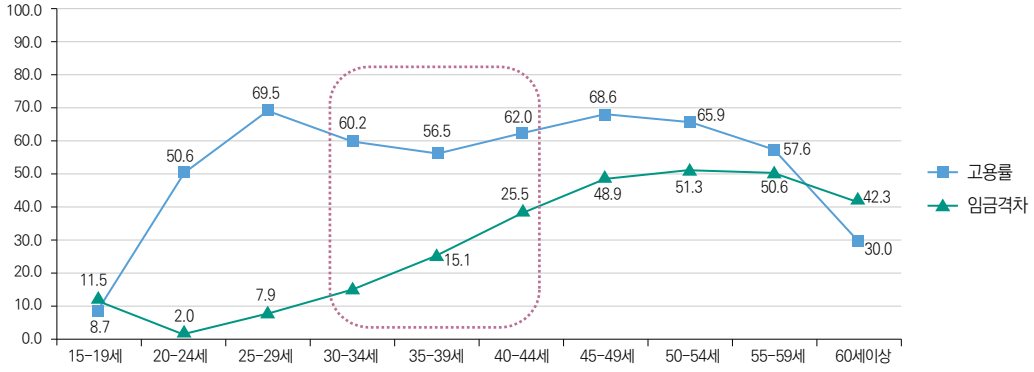

* 자료: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경력단절 이후 이전에 비해 월 임금이 15.5%(26.8만원) 감소, 경력단절 경험 여성은 경력지속 여성에 비해 임금이 31.5% 감소(76.2만원)

* 자료: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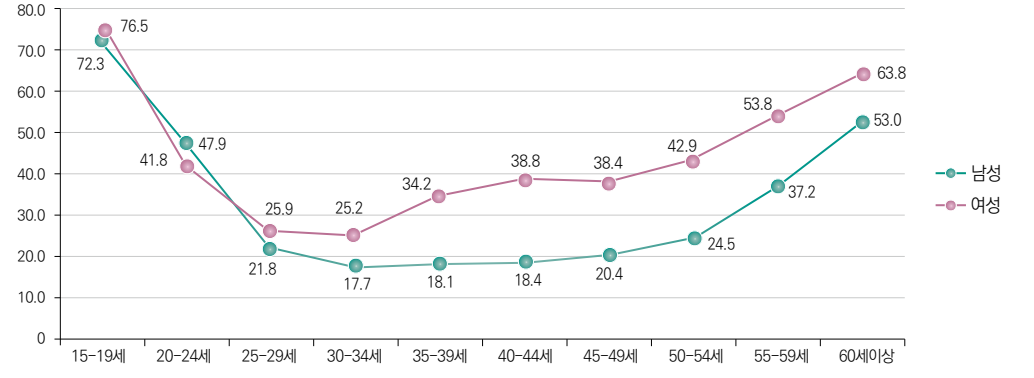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추진계획

2-1 |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남성 집중직종의 성별분리 모집 및 채용제도 개선

1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 이공계 여학생 역량 강화 지원
-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R&D 인력의 여성비율 제고

○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 여성농업인 및 귀농여성 등을 대상으로 전문 농업경영인 및 후계농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 특화과정 확대
- 농촌공동체회사 선정시 여성농업인 우대 등 창업 활성화 유도
- 농어촌 지역 특화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농어촌 지역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여성어업인 참여 비율 확대
- 어촌지역 개발리더, 어촌마을 사무장 교육 등에 여성어업인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정부정책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성 귀어·귀촌인, 결혼이민자 등 예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생활 및 어업기술 교육 동시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 강화

2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선 (고용노동부)

- 성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해 비교대상 동종업종 범위 조정 등 여성고용기준의 합리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대상을 전 지방공기업 등 점진적 확대 추진

○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 완화 (고용노동부)

-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경찰 등 남성 집중직종의 성별분리 모집 및 채용제도의 개선 (경찰청, 여성가족부)

2-2 |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 등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및 배상 절차 마련

❶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 고용관련 정부기구와의 적극적 연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일자리위원회 등 고용 관련 추진체계에 학계, 여성고용 관련 단체 및 현장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전문가 발굴·추천 및 위원 임명

○ 고용평등 분야 민간 인프라 확충 (고용노동부)

-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확대 추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협의체 운영 강화 및 여성 위촉 확대

❷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및 피해자 구제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채용 - 배치 - 승진 - 평가 - 보상 등 고용상 전 단계별 성차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감독 강화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권리 구제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비밀유포금지 의무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추진(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사업장 대상 홍보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
- 중소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행위 계도조치 실시

2-3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사업장 대상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 부과
-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돌봄노동자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 등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1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 및 지표 관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 주요 정책 고용영향평가 시 성별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성별임금격차 지표 관리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 부과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TF 운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성평등임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유사업무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및 지도 강화

*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임금기준,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

- 성별임금차별 사건 권리구제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❷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질 제고
-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보호 제도화를 위한 법률·제도 정비

○ 돌봄노동자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도모
-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 임금수준 개선
- 다양한 분야의 돌봄노동자 인력기준 강화 및 관리제고

○ 공공기관 환경미화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공공기관 환경미화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

2-4 |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 여성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유형별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여성창업 아이템 발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새일센터 기능 강화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 여성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청년여성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육아휴직 중인 취업여성에 대한 직장복귀 상담 및 교육 제공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교육, 멘토링 및 직장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❷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경력단절 여성 사례관리 등 특화 취업 지원 강화
-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차별화된 취업 지원
- 워크넷 및 고용보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취업정보·훈련정보·지원금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일자리포털로 제공
- 고급·융합기술 중심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망 분야 훈련 참여 유도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속 추진

○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의 취업 장려금 지원

○ 여성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지역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전문가상담 및 애로해결 등 지원
- 기술기반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등을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 새일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정보제공, 교육훈련, 멘토링 등 창업서비스 제공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D분야 석·박사급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산·학·연 연구기관을 매칭하여 여성과학 기술인의 경력복귀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복귀단계에 따른 교육 및 멘토링 제공

❸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 유형별 새일센터 확충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의 경력개발형·농어촌형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 새일센터의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 여성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개발 등 창업과정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 창업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연계하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의 아웃소싱 업무를 여성 전문인력(프리랜서) 등과 연결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현황 및 진단

정치 및 정부 고위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17.0%에 불과한 수준이고, 특히 지역구의 경우는 10.3%에 불과 (* 제20대 국회 기준)
- 정부조직법상 장관(급)의 경우 금번 정부에 들어서 여성의 비율이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확대 필요
- '16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각각 5.6% 및 4.6% 수준에 불과

정부는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이행하여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큼

- 정부위원회(위촉직)의 여성 비율은 37.8%로 법률기준(40.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4급 이상) 13.5%, 지방자치단체(5급 이상) 12.5% 수준('16년 기준)
- 교원의 경우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15.4%)과 사립대(25.0%) 간 격차가 크고, 초·중·고의 경우 여성 교원(66.6%)에 비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37.3%)이 낮음('16년 기준)
- 군대·경찰의 경우 여성 비율이 10% 수준(일반경찰 10.6%, 해양경찰 10.8%, '16년 기준)
- 공공기관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7.2%, 임원 중 여성 비율은 12.6% 수준에 불과 ('16년 기준)

〈공공부문별 여성대표성 확대목표 이행 현황〉

(단위: %)

부 문		'15년도 실적	'16년도	
			목표(B)	실적(C)
공직	정부위원회	34.5	37.0	37.8
	4급이상 여성공무원	12.1	13.5	13.5
	여성 교장·교감	34.2	34.9	37.3
군·경찰	여군 장교	7.0	7.1	7.1
	(일반) 여경	9.9	-	10.6
	(해경) 여경	10.0	-	10.8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6.4	16.8	17.2

민간 기업에서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아 여성에게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

○ 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0%,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주요국가 여성관리직 및 임원 비율('16년 기준) 〉

구 분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여성관리직	39.8%	31.7%	35.5%	43.4%	35.4%	12.5%	10.5%	37.1%
여성임원	35.9%	37.6%	22.8%	20.3%	25.5%	4.8%	2.4%	20.5%

* 자료: 이코노미스트(英) '17.3월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 중 발췌(www.economist.com)

* 주: 여성관리직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 공공·민간 관리자가 포함됨

추진계획

3-1 |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 군인 경찰 특수직에서의 적극적 조치
- 여성 교장·교감 비율 확대,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상향 노력 등 교육분야 성평등 임용 확대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의정 활동 전반의 성 주류화 (여성가족부)

- 국회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성인지적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포함하는 성인지적 의정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18 ~ '22)」 수립 추진 (관계부처 합동)

○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각 부처)

○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국가직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지방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 개방형 직위 여성 채용 추진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신규 도입 및 실시, 개방형 직위 활용 여성 비율 확대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관리자 확대
- 개방형 직위 후보자를 선발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균형인사관리지침 마련 및 적극적 인사관리 강화 (인사혁신처)

- 여성관리직 임용확대를 위한 균형인사지침 개정
- 보직·승진·교육훈련에서 성평등한 균형인사지침 이행 강화

○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 (기획재정부)

- 여성 임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기관 내·외 다양한 여성 인재 임용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
- 여성 임원 후보자에 적합한 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인재풀 확충, 여성인재아카데미의 여성 임원 후보자 교육 확대
-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인사지침 개정
-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시
-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채용 목표율 도입 및 이행 모니터링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신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행정안전부)

- 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제 순차적으로 도입
  ※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 지방공기업 직급별 현황 분석을 통해 연도별 여성 관리자 목표안 마련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여성가족부, 각 부처)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및 유지 모니터링

-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이행점검 강화(부처별→위원회별), 남성 위원 비율이 낮은 위원회의 성별 비율 준수 관리
- 정부위원회 대비 여성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지자체 위원회에 대한 개선 권고 실시, 2회 연속 개선권고 위원회는 언론 공표

  ※ '16년 말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37.8%, 지자체 위원회 32.3%로 5.5%p 낮음

-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현황 점검 신규 추진

  * 「헌법」 또는 별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 「5대 국정목표」 의사결정 위원회를 '주요 위원회'로 선정 중점 관리

❸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 군 간부 여성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 설정 및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국방부)

- 여성인력(장교, 부사관) 확충 목표치 상향 조정
- 양성과정별 군 간부 선발시 여성 비율 상향 조정
- 미래의 전쟁 상황에 맞는 국방 분야 여성 인력활용 관련 인식 개선
- 양성평등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여군 근무여건 개선 추진

○ 여성경찰 확대를 위한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자 육성 방안 마련 (경찰청, 해양경찰청)

- 경찰공무원 여성 비율 확대 및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 구분모집 폐지 검토
- 해양 여경 공개경쟁채용 및 응급구조 분야 경력경쟁채용 등 선발 시 여경 채용비율 확대
- 관리직 여경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여경의 직무역량 발휘를 위한 출산, 양육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 육아·출산휴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업무대행 제도 활성화

○ 군인·경찰 등 특정 성별 집중 분야 성차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국방부, 경찰청)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및 교육 강화
- 업무배치, 승진, 교육훈련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마련

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 여성 교장·교감 비율 확대 (교육부)

- 전체 여성 교장·교감 목표비율 40% 이상 달성
-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자체계획 수립 및 교육부 이행 점검 추진

○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사립대학('16년 25%)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

- 국립대학 여성교원 임용확대를 위한 임용목표비율 적극 설정

  ※ ('16년) 15.4% → ('22년) 18% 이상 목표

- 국립대학 여성교원 임용실적 평가 및 지원
- 대학의 여성 교원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동기부여 및 인식변화 유도
-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여성교원임용 확대 유도

  * 전임교원 여성비율 및 신임 여성교원비율 등

3-2 |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 기업·기관 관리직, 인사담당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추진 등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공개, 고위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확대 지원

❶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기업·기관 관리직, 인사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기업의 의사결정과 인재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직 또는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중소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을 위해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여성가족부)

❷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여성임원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 민간기업 고위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제공
-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임원 확대관련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❸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 전문직 법정 법인 또는 단체의 성평등한 운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법률에 근거한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률에 따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 법인 또는 단체 내 여성대표성 현황 조사 및 대표성 제고 방안 마련

3-3 |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육성 사업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확대 등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사업 활성화 (여성가족부)

- 여자 대학생, 정치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육성 사업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 여성의 경력단계별(청년여성(대학/신입) - 중간관리자 - 고위관리자)로 이어지는 중장기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 여성관리자 DB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부)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리자 DB 구축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 정치, 경제, 교육, 공공부문,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여성 인사와 청년 여성 연계사업 확대 운영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1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3 법정근로시간 준수
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2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3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현황 및 진단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 수준인 반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음

〈OECD 주요국가 연간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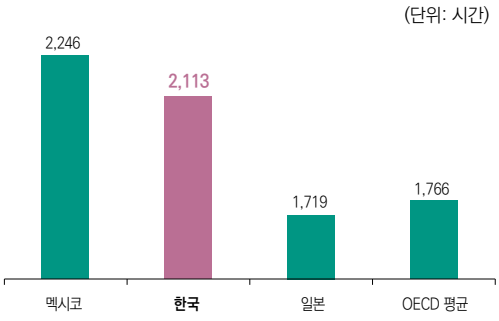

* 출처: OECD ('15년 기준)

〈OECD 주요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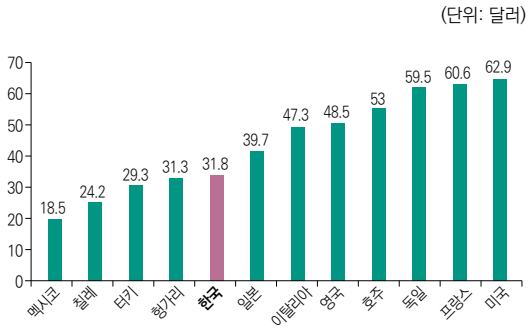

* 출처: OECD, 「Productivity and ULC」 (2016, 11월)

- 기업현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임신·출산·돌봄의 사유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는 저조한 실정

  ○ 결혼, 자녀 출생, 미취학 아동 돌봄,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및 교육, 가족간병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38%로 남성 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결혼·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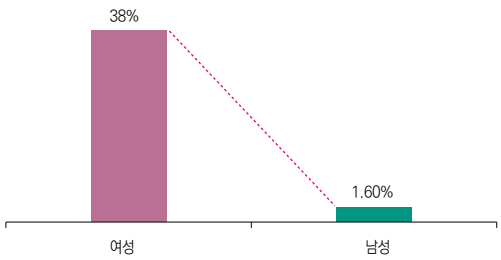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 가정에서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 차이가 커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이중부담을 느끼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에도 여성의 부담이 매우 큰 수준

〈성별 기혼자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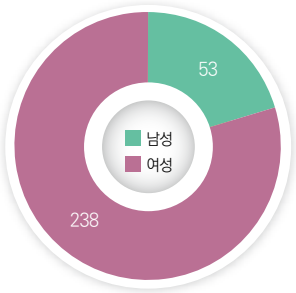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

〈OECD 주요국가의 성별 가사노동 시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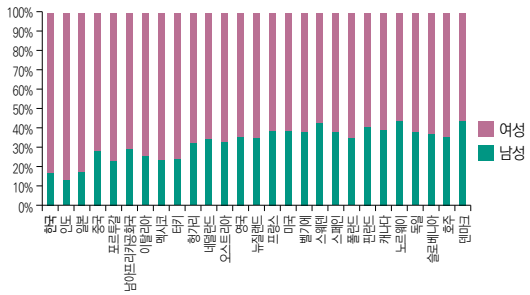

* 자료: OECD, 「OECD Gender Data Potal」, 2016, 12월 ('09년 기준)

○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여성들은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27.4%)를 1순위로 꼽음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 자녀가 있는 남성 중 32%가 돌봄 시간을 늘리길 원하고, 19.4%가 가사시간을 늘리길 원하는 등 남성들도 가사·육아 참여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육아휴직자 남녀 비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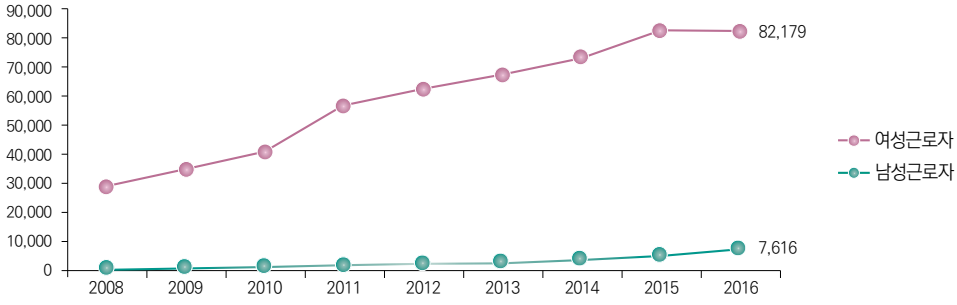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 육아휴직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아직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낮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한국 40%, 덴마크 100%, 스웨덴 80%, 독일 67%, 일본 67%(180일 이후 50%)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

소득감소	직장경쟁력 저하	동료의 업무부담	부정적 시선	직장 복귀	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유연근무는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고 유연한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실제로 활용은 미흡한 상황

○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4.2% 수준에 불과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6)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조사, 대한상의, 2016)

- 근로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
- 기업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92.0%), 이직률 감소(92.0%), 우수인재 확보(87.3%) 등 긍정적 효과

추진계획

4-1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초등돌봄 교실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등을 확대하여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❶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가정 지원 강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 개발 확산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늦은 오후 이후 보육서비스 내실화
- 어린이집의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등 격차 완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의 평가제로 전환
- 평가기관의 법정기관화 통해 평가 사각지대 해소 및 평가 전문성 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어린이집 등 급식관리 지원

○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추진 (여성가족부)

- 모바일 기반 '청소년 미혼모용' 사이트 구축 등 임신 초기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 접근성 강화
- 청소년한부모 대상 생활설계, 경제활동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여성가족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확대(52% → 6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본인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한부모가족 대상 LH공사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학업 중단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 취업사관학교 내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혼모에 대한 출석 규제 완화

○ 가족돌봄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 휴직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 휴직 대상 확대

○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도입(만 0세 ~ 5세 대상 월 10만원)

○ 연금제도 내 돌봄자 보상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출산 크레딧을 자녀 양육에 대한 크레딧 제도로 확대·개편 검토

❸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민간기업 협력,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인프라 확대
- 맞벌이 부모 지원 강화 등 지역사회 공동육아 확산
-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유휴공간과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보건복지부)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을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각각 40%까지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관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검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형 백화점·마트 등을 타겟으로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도
- 설치의무가 없고 단독설치가 곤란한 중소기업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속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 및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추진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보건복지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등 우선 참여

○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보건복지부)

- 치매안심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4-2 |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 육아휴직 허용 제외 동일사업장 근속기간 요건 완화, 육아휴직 사용 촉진제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단계적 확대 및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 교육 프로그램 제공

❶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 임신·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고용노동부)

- 무기계약 전환 간주기간 동안 출산휴가 미포함 개정 추진
-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시기 소득보장 강화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 난임휴가 도입을 통한 모성보호 강화

○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의 연차 추가 보장
- 대체인력 채용지원협의체(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등) 활성화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지속 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관리자 업무평가 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육아휴직 활용여부 반영 추진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분할 횟수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관련 지침 마련 (고용노동부)

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 법정 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특례업종 축소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도입 검토
- 초과수당 제대로 안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특별근로감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조건 개선 유도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외 문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 검토

○ 기업의 근로시간 준수 자정노력 유도 (고용노동부)

- 장시간근로가 보편화된 업종과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부문을 중심으로 지도·감독 지속 확대
- 기업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설계 등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업종별 근로환경을 점검하여 사업장 감독,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자율적인 점검 및 개선 유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근로자 부담완화 (고용노동부)

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 지원 강화

※ 업종·직무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근무형태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및 기업 대상 정보 제공 등

○ 다양한 연차휴가제 도입 검토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 다양한 연차휴가제 도입 검토

○ 연차 사용 활성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월간 연차 사용 활성화
-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제도 시행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 지원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
- 미활용 휴가의 금전보상 관행과 사내눈치 등 경직적 조직문화개선
- 휴가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관행에 대한 감독 실시

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고용노동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대상범위 확대

○ 남성에 대한 가사·육아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아빠 육아 관련 정보의 온라인 통합제공
- 남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아버지를 위한 상담·교육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아버지대상 부모교육 및 자녀돌봄프로그램 지원

○ 노년기 남성의 돌봄 참여 강화 (여성가족부)

- 노년기 남성에 대한 맞춤형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4-3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및 실효적 인센티브 발굴·확대
-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일·생활 균형 근로감독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❶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여성가족부)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및 실효적 인센티브 발굴·확대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운영점검 및 일·생활 균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지역 기반의 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위해 지역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사후컨설팅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정보 공개 확대 (여성가족부)

- 채용 웹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표출 확대

❷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

○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직장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교육 의무화 추진 검토

○ 최고경영층에 대한 일·생활 균형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기업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지원 (고용노동부)

○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 건강보험(임신·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 등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제 사업장 근로 감독 강화

❸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여성가족부)

-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운영 활성화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실천포럼' 참여 활성화
- 지방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지방포럼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실천약속 제정 및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기업이 동참하는 일·생활 균형 실천약속을 제정·추진
-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추진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역별 지표 개발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여성가족부)

○ 고등교육기관의 임신·출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환경조성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임신·출산 여학생의 휴학 인정

○ 일하는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강화 (교육부)

- 시·도교육청, 지역 기관 연계를 통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상담 지원
-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2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현황 및 진단

국민의 대부분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여성의 상당수가 폭력 피해를 경험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2.0% (여성 88.8%*, 남성 75.3%)로 매우 높고, 여성의 15.1%는 성추행이나 폭력 또는 위협적 상황을 경험함

* 자료: 20대 여성 92.5%, 30대 여성 93.1%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검거 시 구속건수는 감소하고 불구속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복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

○ 특히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은 1,000 ~ 1,100건 수준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성폭력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도 증가 추세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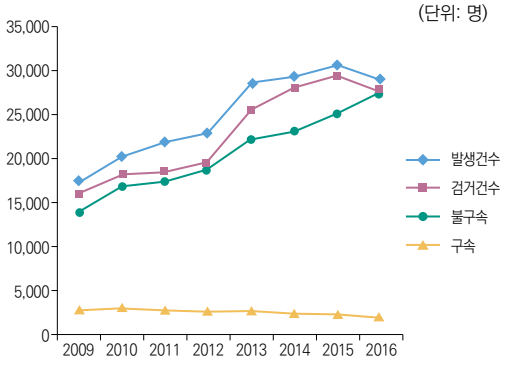

* 자료: 경찰청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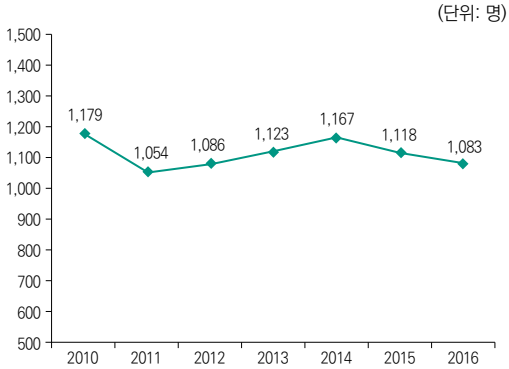

* 자료: 경찰청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성매매 등 성매매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성매매 유입은 쉬워지고 단속 및 검거는 어려운 실정

- **여성의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하여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ㅇ 저체중 집단 여성 중 15.9%가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중이고, 여성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하게, 남성은 실제보다 마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자료: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

-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성관계 중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높아 여성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피임 교육이 절실한 실정**

  ※ 성관계 경험 청소년 중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 13.6세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5%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3-2015)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부족한 상황**
  - ㅇ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경우가 많고, 양육에 있어서 지원 필요

추진계획

5-1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가칭)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여성폭력 근절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민간사업체 대상 고충 상담원 지정 의무화 추진
-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기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의무 강화,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 반영 추진제공 등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포괄적 이고 근본적인 법 제정
- '(가칭)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여성가족부)

- 「형법」 제32장 명칭(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 변경 검토
- '피해자 성(性)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필요성 검토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제도 개선
- 아동, 장애여성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가중처벌 등

○ 여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 생산 (여성가족부, 경찰청)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통계 생산 체계 개선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지표 개선 (경찰청)

- 여성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밖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율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2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 여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 (경찰청)

- 가정폭력 행위자의 긴급임시 및 임시조치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반복·상습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극 수사, 재발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 등에 대한 적극 확인
- 성구매자, 신변종 성매매 업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 성매매알선업자 몰수추징 활성화 등

○ 신상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법무부)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차등화된 등록기간 제도의 안정적 시행
-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속,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

○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실시 및 전문성 제고 (법무부)

- 수강 집행센터 등을 통한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강사 양성
-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 프로그램 집행으로 수강명령 전문화

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 예방교육 이행 실적점검 및 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한 경우 주무부처 통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후속조치 강화
-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기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모니터링 및 이행 관리·감독 강화

  * 기관장 및 관리자 특별교육 → 기관명 언론공표 → 예방교육 이행계획서 제출

- 피해 취약계층(인턴·신입·비정규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여성폭력 예방교육 모니터링 및 이행 관리·감독 강화, 환류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
- 통합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 훈련을 위한 체계 개편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법무부)

- 도서벽지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지방자치단체·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시민 로스쿨' 운영 등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 군대 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국방부)

- 군간부의 교육 참여율 제고
- 군대 내 폭력 관련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양성 확대

○ 초·중·고·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교육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 교원, 교직원, 학교장 등 관리자 교육 콘텐츠 개선 및 교육 운영 강화
-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 반영 추진
-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교양과목 및 특강 활성화 권장
-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구현을 위한 자체 인식 개선 활동(동아리 등) 강화 권장
-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권장

○ 기업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 (고용노동부)

- 민간사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현황 점검 내실화
-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10인 미만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교육 운영방안 마련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위험지역 환경 개선, 범죄 예방활동 등에 참여

○ 여성에 대한 폭력 홍보 관련매체의 다각화 (여성가족부)

- 공익광고, SNS, 영화, 애니메이션 등 활용한 홍보물 제작
- 국민참여형 홍보캠페인 운영

5-2 |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기반 마련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

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된 여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마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개정

※ 얼굴 노출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고 특정 부위·행위가 촬영된 영상물 등 유포 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 신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일지라도 타인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법령 반영 검토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대응체계 마련 (법무부, 경찰청)

- 사이버 수사대의 여성폭력 수사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 사이버 상 폭력피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협박, 유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유해정보 게재,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 유통 사이트 폐쇄, 유포된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확대
- 디지털·온라인 성범죄 관련 법적대응체계 마련 및 국제공조 강화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 지원- 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유포자 대상 디지털 기록 삭제비용 부과
- 저장매체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에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관련 내용 추가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피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 확대

❷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마련을 위해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 구성·운영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법무부, 경찰청)

- 인식 개선 및 사건 처리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사건 처리 실무 매뉴얼 제작 검토

❸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여성가족부, 각 부처)

-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처·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 '주무부·처·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제출 의무화
- 공공기관 대상 감사 및 평가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 반영

-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불리한 처우 시 기관·기관장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
-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및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인사제재 상향 추진
-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 및 공공기관에도 적용 추진
- 성희롱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관한 현장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 단계적 실시('18 ~ '19년)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방부)

- 군대 내 성폭력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및 담당자의 수사역량 강화
-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의 정기적인 실태 파악(3년 주기) 및 이행실태 현장점검 강화
-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양성평등상담관 등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확대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
- 군대 내 피해자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
-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 검토

※ 제한적 신고제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조사 배제, 신원보장 하에 의료 지원, 심리서비스 등 지원

- 성폭력 피해에 따른 청원휴가, 휴직사용 등 활성화

○ 학교 내 여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교육부,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 초중등 성범죄 교원에 대한 미온적 처리 개선

※ 시·도 교육청에서의 직접 조사 실시, 미온적 처리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 학생-교사/교수, 교사-교사 등 폭력피해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지원
- 초중등 교내 폭력 피해 발생 보고 의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강화
-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Wee센터, SPO(학교전담경찰관) 등 초·중·고 학교 폭력 상담·지원체계 홍보 확대 및 활성화

○ 기업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비 (고용노동부)

-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권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사내 상시 게시 의무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근거 명문화
- 성희롱 발생 가능성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조항 세분화

※ 보호조치: 징계 전 임시조치로서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접근금지 등
※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에 2차 피해도 포함

- 외부 심리상담(고용평등상담실) 연계 체계 운영

5-3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 연계 강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여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1366의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및 긴급대응 강화, 경찰과의 협업시스템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 의료원, 응급센터 등 공공의료체계와의 연계 강화
- 아동, 노인 등 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의 네트워크 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 해바라기센터의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장애인 등 피해자 특수성에 맞는 피해자 의사소통 및 법률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회복, 의료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지원 사업 강화 및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확대

❷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장애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형 보호시설' 확충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피해 지원 실태 점검 및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장애 여성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및 퇴소 후 자립 생활 지원

○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 이주 노동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지원 내실화
- 유흥업 종사자 이주여성(E6-2)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지원 강화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여성가족부)

- 청소년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3년 주기) 실태 파악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센터 지정 운영

※ 현장상담, 온오프라인상담, 법률/의료연계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여성 대중문화 예술인의 폭력 피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성폭력 실태 조사 시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 실태 조사항목 추가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실태조사 홍보 등의 지원

-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신고창구 마련
-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기적인 폭력예방교육 실시(강화) 및 성희롱, 성폭력 방지 매뉴얼 제작·배포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심리적, 법률적 서비스와 출산 이후를 위한 상담 등 통합적지지 서비스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 지급 추진

❸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
- 폭력피해 유형별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작·개선
- 여성폭력지원시설 평가 및 컨설팅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장애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한 감수성 훈련 실시
- 장애 유형별 조력인력 양성 및 조력인력의 장애 감수성 교육 강화

○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 법무부)

- 전담 수사부서 내 여성 수사관 비율 확대
- 여성폭력 수사력 제고를 위한 폭력유형별 교육훈련 강화 및 사건 처리 실무매뉴얼 배포
- 성폭력 무고수사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이 담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수사, 재판담당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 (법무부)

- 여성폭력 및 인권 관련 교육 확대
-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환류)
-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임금상향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배치 확대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배치 기준 마련 및 증원 추진

- 소진방지 등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 피해자의 명예회복 (외교부, 여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TF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및 정책 추진
- 청소년 대상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 실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여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 피해자 관련 사료의 조사·연구사업 체계화를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 및 내실화
-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홍보, 교육

5-4 |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외모 및 성형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질병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개선
-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에 대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세부과제 도출

○ 성인지적 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여성가족부)

- 삶의 양식, 건강생활실천 방식 등 성별에 따른 건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성별화된 작업환경 및 직무분리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례연구 지원
-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성별 건강 정보 및 통계제공 강화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에의 성별 지표 개발 및 적용
- 성별지표에 따라 종합계획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지역 건강정책 추진의 성인지 관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여성건강사업 추진, 실무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등의 내용 포함 검토

❷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 외모 중심의 사회인식 및 관행 개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외모 및 성형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계 종사자에 배포하여 방송·광고제작·편성과정에 활용 유도
- 지자체의 미용성형의료 관광산업 육성 시 심사 항목 요건 등 강화
- 의료법 개정을 통해 미용성형 의료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도지사 관리·감독 권한 부여
-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관련 부정불법 식품 및 의약품 검사·관리 강화
- 고용 시 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모집·채용 상의 모니터링, 사업 지도·감독 강화
- 외모중심의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 질병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개선 (여성가족부)

- 유방암, 갱년기 증상 등이 남성에게도 발생하고, 폐암, 고혈압이 여성에게도 발생하는 보편적 질병이라는 정보 확산

❸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 학교 보건실 내 생리대 비치하여 여학생들에게 제공
- 일정소득 이하 가구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교 성교육 개선 검토
- 청소년 성교육 전문 교사 양성
-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학교, 지역 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인권 교육 내실화 지원

❹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 파악 (보건복지부)

-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피임기구 이용 및 피임약 복약 안내, 피임방법 등의 정보제공
- 남녀가 함께 피임 실천하기 홍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정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지자체)

-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병원 지원 확대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 난임 여성 지원강화 (보건복지부)

-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다태아의 조산·저체중 출생 등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의 보호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해 재가 미혼모의 병원비 등 출산 지원

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보건복지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록·관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종사자 대상 장애인건강권 교육 주기적 실시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 검토

○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지자체)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간 통합연계 교육 확대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1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2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3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4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1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2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1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2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현황 및 진단

- 우리사회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필요
  -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2015.7.1 시행)되어 시행 중이므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까지 원활하게 정착 필요

- 지방 각 지역에서 양성평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의식 제고 요망

-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에 성인지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정확한 성평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16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현재 일부 통계에서만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2.3.16. 시행)된 이후 대상 과제 수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 '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34,258건) 중 해당기관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책임관이 개선의견을 제시한 경우(3,369건)는 약 10%에 불과함

Ⅲ. 정책 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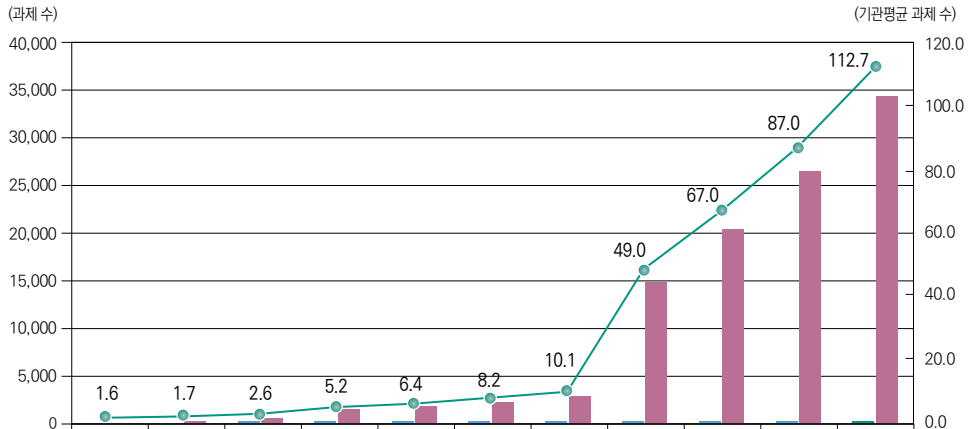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관	53	187	278	295	298	292	293	303	304	304	304
과제	85	314	720	1,531	1,908	2,401	2,954	14,792	20,372	26,438	34,258
기관 평균	1.6	1.7	2.6	5.2	6.4	8.2	10.1	49.0	67.0	87.0	112.7

* 자료: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15년부터 의무화되어,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필요

※ 성인지 예산서는 '10년 회계연도부터 작성 시작, '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나, '16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331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96개에 불과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

○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의 시민단체 참여 기회 확대가 요구됨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기구와의 다각적 협력 강화 필요

○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

추진계획

6-1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등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 및 심층평가방식 도입으로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❶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검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각 부처, 각 지자체)

○ 「성차별금지법(가칭)」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제정 추진 검토 (여성가족부)

❷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 각 부처별 소관 정책에 대한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여성가족부, 각 부처)

○ 양성평등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체계 마련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각 부처)

- 양성평등정책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추진

❸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 사회 각 분야별 성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제 발굴 (여성가족부)

-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성차별 현황 및 정책의제 발굴 등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통계청, 여성가족부)

-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방법, 대상, 문항, 결과 등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안 제시

❹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가족부)

-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제도 개선 권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유도

○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 성인지예산의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 (각 부처)

6-2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및 분야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성주류화 교육 확대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 신규 및 승진 대상 공무원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 성인지 교육 과정 확대
- 복지, 보건, 교육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 시·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정책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 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정책 교육
- 담당자 워크숍 정기 개최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 지원
- 여성친화도시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해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 정책 추진지원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일원화
-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계자, 연구기관, NGO,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❸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 양성평등 전문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마련
- 전문강사 자격기준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역량 진단
-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컨설턴트 자격기준 강화
- 정책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 구성·운영

6-3 |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공모사업 성과 확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협력 사업 확산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1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분야별 자문단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주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2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 사업' 성과 확산 (여성가족부)

- 공모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확산 홍보물 제작
- 사업성과 온라인 배포 방안 고려

○ 성평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여성가족부)

○ 여성운동 단체와 남성 활동가의 협력사업 활성화 (여성가족부)

-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운동 단체와 남성 활동가 등의 협력 사업 발굴·지원

6-4 |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 남북 여성교류 활성화 지원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내실화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및 평화유지군 활동의 성평등적 실행

1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 남북 여성교류 활성화 지원 (통일부, 여성가족부)

- 평화통일 실현과정에서 여성참여 보장과 남북 여성교류 지원
- 협상과 통일교육 관련 여성전문가 양성 및 지원
- 여성관련 국제기구의 북한 여성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촉구 및 협력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내실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 분쟁예방,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등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 정기적 개최 및 시민사회 의견 적극 반영

○ 평화유지군 활동의 성평등 추구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 UN 평화유지군 인력풀 내에 여성 경찰관 별도 편성
- 인력풀 대상 전문교육의 주기적 실시로 평화유지군 여성 참여 확대

❷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협력 (여성가족부, 외교부)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및 UN Women의 주요 정책 의제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동아시아 가족양성평등 각료회의 등을 통한 공동이행 협력

○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각 부처)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
- 각 부처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권고

Ⅳ. 과제별 소관부처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과 제 명	부 처 명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1-[1]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활성화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청소년 대중매체 모니터단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1-1-[3]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기능 강화 • 온라인 상 성차별 및 선정적 내용에 대한 심의 기반 마련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2-[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 • 초중등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1-2-[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진로교육법의 양성평등 내용 강화 • 양성평등한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대상 교육 강화	교육부

과 제 명	부 처 명
1-2-3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1-2-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여학생의 생리공결제 지속 운영 및 안내 • 양성평등 초중등 교육체계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초중등 학교 운영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강화 •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교육부, 여성가족부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3-1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양성평등 결혼 문화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
1-3-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성평등 언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1-3-3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국립여성사전시관 이용 활성화	여성가족부
1-3-4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양성평등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제고 •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및 남성 참여 활성화 •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하는 양성평등정책 홍보	여성가족부

과 제 명	부 처 명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1-4-①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방송 예비인력 양성 단계에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법조인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근로감독관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1-4-②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 온·오프라인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분야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별 표준교안 개발	여성가족부
1-4-③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 기반의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양성평등 전문강사의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과 제 명	부 처 명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1-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어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2-1-②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선 •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 완화 • 경찰 등 남성 집중직종의 성별분리 모집 및 채용제도의 개선	고용노동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2-2-①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 • 고용관련 정부기구와의 적극적 연계 • 고용평등 분야 민간 인프라 확충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2-2-②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2-3-①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 및 지표 관리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TF 운영 • 성평등임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 제 명	부 처 명
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돌봄노동자 실태파악 및 처우개선 • 공공기관 환경미화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2-4-[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 여성노동자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 대상별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개발·운영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여성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지원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 유형별 새일센터 확충 • 새일센터의 기능 강화 •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연계하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 구축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과 제 명	부 처 명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의정 활동 전반의 성 주류화	여성가족부
3-1-[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18 ~ '22)」 수립 추진 •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수립·관리 • 균형인사관리지침 마련 및 적극적 인사관리 강화 •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신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각 부처
3-1-[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 군 간부 여성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 설정 및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 여성경찰 확대를 위한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자 육성 방안 마련 • 군인·경찰 등 특정 성별 집중 분야 성차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3-1-[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 여성 교장·교감 비율 확대 •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사립대학('16년 25%)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

과 제 명	부 처 명
•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2-[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기업·기관 관리직, 인사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양성평등 경영 지원을 위해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3-2-[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3-2-[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 전문직 법정 법인 또는 단체의 성평등한 운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3-3-[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사업 활성화	여성가족부
3-3-[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 전략적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운영 계획 수립 • 여성관리자 DB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과 제 명	부 처 명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1-Ⅰ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1-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추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 가족돌봄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연금제도 내 돌봄자 보상제도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4-1-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 •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4-2-Ⅰ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 임신·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 육아휴직 시기 소득보장 강화 • 난임휴가 도입을 통한 모성보호 강화 •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과 제 명	부 처 명
4-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분할 횟수 확대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관련 지침 마련	고용노동부
4-2-[3] 법정 근로시간 준수 •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기업의 근로시간 준수 자정노력 유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근로자 부담완화	고용노동부
4-2-[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 다양한 연차휴가제 도입 검토 • 연차 사용 활성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4-2-[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 남성에 대한 가사·육아 정보 제공 • 아버지를 위한 상담·교육 지원 강화 • 노년기 남성의 돌봄 참여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정보 공개 확대	여성가족부

과 제 명	부 처 명
4-3-[2]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 최고경영층에 대한 일·생활 균형 교육 강화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기업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 일·생활 균형 근로감독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4-3-[3]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 일·생활 균형 실천약속 제정 및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역별 지표 개발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4-3-[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 고등교육기관의 임신·출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환경조성 • 일하는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과 제 명	부 처 명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여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 생산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지표 개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5-1-2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 여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 • 신상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실시 및 전문성 제고	경찰청, 법무부
5-1-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 군대 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초·중·고·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 기업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 여성에 대한 폭력 홍보 관련매체의 다각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과 제 명	부 처 명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5-2-[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된 여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마련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대응체계 마련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5-2-[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기반 마련 •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5-2-[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학교 내 여성폭력 피해실태 점검.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기업 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비	국방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3-[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과 제 명	부 처 명
5-3-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장애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 여성 대중문화 예술인의 폭력 피해 지원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5-3-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수사, 재판담당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5-3-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 피해자의 명예회복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활성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5-4-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 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 지역 건강정책 추진의 성인지 관점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지자체
5-4-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 외모 중심의 사회인식 및 관행 개선 • 질병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개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제 명	부 처 명
5-4-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보건복지부
5-4-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 파악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 난임 여성 지원강화 •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5-4-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과 제 명	부 처 명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중앙부처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별도 배치 검토 • 「성차별금지법(가칭)」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제정 추진 검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각 부처, 지자체
6-1-[2]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 각 부처별 소관 정책에 대한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 양성평등정책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체계 마련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각 부처
6-1-[3]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 사회 각 분야별 성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제 발굴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여성가족부, 통계청
6-1-[4]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6-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및 업무 분야별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과 제 명	부 처 명
6-2-[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 시·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정책 역량 강화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6-2-[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 양성평등 전문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6-3-[1]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 분야별 자문단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6-3-[2]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 사업' 성과 확산 • 성평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여성운동 단체와 남성 활동가의 협력사업 활성화	여성가족부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6-4-[1]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 남북 여성교류 활성화 지원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내실화 • 평화유지군 활동의 성평등 추구	여성가족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6-4-[2]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협력 • 성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각 부처

V.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1. 수립목적 및 활용방안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과 연계하여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최초로 수립('18 ~)하여 국정과제(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

- 각 부처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상황 확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에 활용

2. 부처별 실행목표

기획재정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국가적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내실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교육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및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학교 및 교육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폭력 근절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R&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

외교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여성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확대
여성폭력 근절	▶ 재외 공관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 증진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추진

통일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통일 기반 조성에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V.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법무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여성폭력 근절	▶ 취약여성 사법제도 접근권 강화 및 활용 확대 ▶ 성폭력 처벌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국방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로 군대 내 양성 평등 의식 증진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군 인적자원 개발의 성별 형평성(군장학생 및 전직 지원 포함)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군 간부 여성비율 확대와 직무 분리 완화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 군부대 육아 지원 시설 확대
여성폭력 근절	▶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여성 건강 증진	▶ 군인의 모·부성권 보장

행정안전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가족 친화 경영 정착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문화·예술, 전문체육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여성 대표성 증진
여성폭력 근절	▶ 문화예술·전문 체육·관광산업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부품 소재,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등 R&D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증대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산업·통상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보건복지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복지 및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여성 건강 증진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여성 건강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환경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환경 분야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확대 ▶ 환경 일자리 성별 격차 완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국제 환경 협력에서 여성 참여 강화

고용노동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 성별 직업 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기업의 유리천장 근절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여성폭력 근절	▶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여성가족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의식 해소 기반 마련 ▶ 생활 속(교육환경, 가족문화, 온라인 상 등)에서의 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 ▶ 고용에서의 성차별(성별임금격차, 성별직업분리 등) 개선 기반 마련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공공분야,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 여성 관리자 양성 등 여성 인력 개발 강화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여성폭력 근절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 ▶ 여성장애인 및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V.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국토교통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여성폭력 근절	▶ 대중 교통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영역	실행 목표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정책금융, 벤처 및 엔젤 투자 등 금융 접근성에서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기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창업지원 사업 등의 성별 격차 완화

경찰청

정책영역	실행 목표
여성폭력 근절	▶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 내실화 ▶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 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사이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농촌진흥청

정책영역	실행 목표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 ▶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여성 건강 증진	▶ 여성 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강화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2018년 1월 인쇄·발행
- 발행인: 정 현 백
- 발행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Tel. 02) 2100-6152 Fax. 02) 2100-6482
- 인쇄처: 중앙기획·중앙인쇄사 Tel. 02) 736-2866~7